

의안번호	2218969
의 퇴 인	박성훈의원
회 답 일	2026. 6. 23.
추계번호	26C2679

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른 우수생활문화시설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7억원(연평균 5억 4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우수생활문화시설의 인증 (안 제8조의2)	700	500	500	500	500	2,700	54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의2(우수생활문화시설의 인증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생활문화시설을 우수한 생활문화시설(이하 “우수 생활문화시설”이라 한다)로 인증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8조의2(우수생활문화시설의 인증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안 제8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생활문화시설을 우수한 생활문화시설로 인증하는 경우,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문화체육관광부는 인증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고, 이를 인용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
 - 우수생활문화시설 인증제 운영 예산(안)
 - 심사 기준 개발(200백만원)
 - 인증제 운영 및 심사(300백만원)
 - 인증제 브랜드 제고 및 교육, 인증 시설 홍보(200백만원)
 - 위 운영 예산 중 심사 기준 개발은 추계기간 중에 1회 집행되는 경비로 가정하여, 추계 첫 해인 2027년에만 반영함

[표 2] 우수생활문화시설 인증제 운영을 위한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
심사 기준 개발	200	-	-	-	-	200
인증제 운영 및 심사	300	300	300	300	300	1,500
인증제 브랜드 제고 및 교육, 인증시설 홍보	200	200	200	200	200	1,000
합계	700	500	500	500	500	2,70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(과장 직무대리)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assembly.go.kr